

# 대구예술대학교 계약직원 평정규정

(개정 2010.03.31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19.07.26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23.01.25. 교무위원회)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계약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계약직원의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원으로 한다.

**제3조 (평정시기)** 계약직원의 평정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.

**제4조 (평정원칙)**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.

1. 근무를 통한 관찰 및 각종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.
2. 피평정자의 직무의 내용,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평정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평정의 종류 및 평정점)** 계약직원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으로 하고, 별표1에 의하여 1차 평정자 50점, 2차 평정자 50점으로 각각 평정하고 절대평가 한다.

**제6조 (평정자 및 확인자)** ① 일반행정계약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소속부서의 과장(팀장) 급 보직자가 1차 평정자가 되고, 소속부서장이 2차 평정자가 된다. 그리고 확인자는 사무처장이 된다. 과장(팀장)급 보직자가 없는 부서에는 총장이 부서내 상급자를 1차 평정자로 지정하며 부서장이 없는 부서에는 사무처장이 2차 평정자로 평정한다.

② 학부·전공행정계약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학부장, 그 전공의 교수 및 부서장이 1차 평정자가 되고, 사무처장이 2차 평정자로 평정한다. (신설 2019.07.26.) (개정 2023.01.25.)

**제7조 (평정결과 활용)** ① 이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계약직원 재계약 여부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②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갱신 할 수 없다.

**제8조 (평정결과의 공개제한)**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